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85896(본소), 2020나85902(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 ·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망 I의 소송수계인 J
10. K
11. L
12.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이영대

피고, 항소인 1. N

2. O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3. 주식회사 P

4. Q

5. R

6. S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192955(본소), 20

19가단530029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 N, O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 N, O이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②

80,24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③ 2019. 4.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과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9. 체결된 소유권보존등기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Q, R, S(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접수 제1199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T에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N, O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들은 반소청구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피고 N, O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피고 N, O에 대한 나머지 부당이득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본소 청구 중 피고 N, O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피고 N, O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와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의 일부 인용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면 9행 ”피고 회사 등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를 ”피고 회사 등의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N, O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N, O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 등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등의 반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 등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 회사 등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피고 N, O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회사 등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